## 인지세법 시행령

[시행 2024. 7. 1.] [대통령령 제34269호, 2024. 2. 29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부가가치세제과) 044-215-4323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「인지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인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- **제2조의2(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)**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·보험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 11. 15., 2013. 2. 15., 2017. 2. 7.>
  - 1. 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
  - 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3. 삭제 < 2014. 12. 30.>
  - 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5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6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  - 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  - 8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  - 9.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
  - 10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
  - 1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
  - 12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13.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 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
  - 1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
  - 1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농협은행
  - 1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수협은행
  - 17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  - 18.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- **제2조의3(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)**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 6. 1., 2016. 8. 31., 2019. 2. 12., 2021. 4. 6., 2024. 2. 29.>
  -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  - 1의2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  - 1의3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  - 2. 「전기공사업법」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  - 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  - 4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또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 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  - 4의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
- 4의3.「지방공기업법」제64조의2제3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
- 5.「변호사법」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(受任)계약서
- 6.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7. 「변리사법」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8. 「법무사법」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9. 「공인회계사법」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0. 「세무사법」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1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2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3. 「보험업법」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4. 「관세사법」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5. 「기술사법」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6. 「건축사법」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7. 「도선법」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
- 18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[전문개정 2010. 2. 18.]
- **제3조(동산 양도증서의 범위)**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「자동차관리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
  - 2. 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
  - 3.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(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,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) [전문개정 2010. 2. 18.]

**제4조** 삭제 <2021. 2. 17.>

- 제5조(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)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 8. 27.>
  - 1. 금융위원회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
  -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
  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제5조의2(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)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·매출한 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 <개정 2021, 2, 17.>

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"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·매출한 증표를 말한다.<개정 2021. 2. 17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
- 2. 교통수단, 공연장, 경마장, 운동경기장, 유원지,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
- 3.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[본조신설 2010. 2. 18.]

- **제6조(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)**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"란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. 다만, 신용장은 제외한다. <개정 2010. 11. 15.>
  -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"란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.<개정 2016. 5. 31.>
  -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"란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(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- 제6조의2(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) 법 제3조제3항에서 "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"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
  - 2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
  - 3.「주식・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  -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
  - 5. 「은행법」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
  - 6. 「상법」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
  - 7. 법률 제14096호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「공사채 등록법」(법률 제 14096호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을 적용하는 공사채

[전문개정 2023. 2. 28.]

- 제7조(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)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 문서와 같은 항 제4호,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(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,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(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.
  -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,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(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문서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**제8조(기재금액의 계산)**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- **제9조(보완문서의 범위)** 법 제5조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
  - 2.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·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제10조 삭제 <2007. 2. 28.>

- 제11조(현금납부)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, 납부세액, 납부방법,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(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5. 2. 3., 2023. 2. 28.>
  - 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
  - 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
  - 3. 「산림조합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
  - 4.「새마을금고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
  - 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  - 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(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<개정 2014. 2. 21, 2015. 2. 3.>
  - 1.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2. 신청인의 회계부서・영업부서 간 , 본점・지점 간 , 가맹점(거래처)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 , 인계・인수 통수 , 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
  - 3.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·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·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
  - 4. 현금납부보다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(消印)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
  - 5.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 3항 본문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2. 3., 2023. 2. 28., 2024. 2. 29.>
  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,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,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제11조의2(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) 법 제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14. 2.

21., 2019. 2. 12., 2023. 2. 28.>

[본조신설 2010. 2. 18.]

**제11조의3(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)**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2. 29.]

[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<2024. 2. 29.>]

제11조의4(환급절차)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5. 2. 3.>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[제11조의3에서 이동 <2024. 2. 29.>]

제12조(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)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 2. 18.]

부칙 <제34269호,2024. 2. 29.>

-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